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4056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김성환 의원

찬 성 자: 강득구·강병원·강선우

강준현・강훈식・고민정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김경협 · 김교흥 · 김남국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김태년 · 김한정 · 김회재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박용진 • 박재호 • 박 정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설 훈·소병철·소병훈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양경숙・양기대・양원영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위성곤・유기홍・유동수 유정주 • 유건영 • 유관석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이개호 · 이광재 · 이동주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 아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조승래·조오섭·조승천 조정식·주철현·진선미 진성준·천준호·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68인)

제안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멈추고, 방역 당국은 2021. 12.18.부터 방역 대응 비상조치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 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 실보상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 제고를 기대함.

주요내용

- 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 나.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2 021.12.18. 시행) 이후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9조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2조의2제6항"을 "제12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 및 미지급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중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방역대응 비상조치가 시행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
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신청</u>
	인이 제9조 및 제21조제1항제22
	호의3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2제4항 <u>및 제5항에</u> 따라 중소	<u>부터 제6항에</u>
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	
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 <신 설>
- 2.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 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 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 6. (현행 제5호와 같음) 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1. ~ 22의2. (생략) <신 설>

(5) ~ (7) (현행과 같음) 1. ~ 22의2. (현행과 같음)

22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 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3. ~ 25. (생략) ② ~ ④ (생 략)

23. ~ 25. (현행과 같음)